##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문진석·정성호·서영석

이정문 • 김윤덕 • 이연희

진성준 • 안태준 • 이성유

복기왕 • 이재관 • 강훈식

송옥주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'마을주민보호구간'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.

한편,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,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 사고 사상자 수가 34.1%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 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'마을주민보호구간'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

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0294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 신설).

##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6조의4(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)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 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 다.
  -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도로표 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.
  -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사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1.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: 관할 지방경찰청장
  - 2.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인 경우: 관할 지방경찰청장
  - 3.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,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: 관

할 경찰서장

④ 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기준, 절차·방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294호 도로법	법률 제20294호 도로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<u> &lt;신 설&gt;</u>	제56조의4(마을주민보호구간의
	지정 및 관리) ① 도로관리청
	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
	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
	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
	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보
	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.
	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
	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
	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
	내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
	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
	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
	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
	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구
	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등의
	의견을 들어야 한다.
	1.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

- <u>관인</u> 경우: 관할 지방경찰청 <u>장</u>
- 2.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·광 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인 경우: 관할 지방 경찰청장
- 3.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 우: 관할 경찰서장
- ④ 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 구간의 지정기준, 절차·방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